인사혁신처 /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보 도 자 료		국민에게 신뢰! 공무원에게 자긍심!
작 성 과	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	담당	과 장 강수진(044-201-8131) 사무관 김진경(044-201-8134)
보도일시	2021년 12월 14일(화) 조간(12.13.(월) 낮 12시)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.		

직장 내 괴롭힘 공무상 재해, 법으로 보장

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보상 근거 명시, 국가 책임 강화 -

□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**부상·질병·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**을 담은 **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**된다.

○ **인사혁신처**(처장 김우호)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**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개정안을 입법예고** 한다고 13일 밝혔다.

□ 기존에 하위 법령인 '공무상 질병 판정기준'(인사처 예규)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**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으로 상향 입법**하기 위함이다.

○ **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**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**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**하기 위한 **국가 책임이 강화**되는 것이다.

【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개정안 주요 내용 】

구 분	현재	개선
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	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**인사처 예규에 명시**	**산재와 동일하게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구체적 규정 명시**
현장 · 전문 조사 법적안정성 확보	**공상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**를 위하여 기 운영 중인 **현장·전문조사의 명확한 근거 미비**	공상공무원 지원 제도의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**법적 근거 명확화**

□ 또한, 공상 공무원의 **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**을 위한 **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실시 근거**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.

○ 현재는 **시행령 등을 통해** 공무원연금공단에서 **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**이다.

□ **김우호 인사처장**은 "**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**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**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**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"고 말했다.